

**방 위 사 업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사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전문교육원을 신설하고, 선행연구와 사업관리의 수행주체를 이원화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전투합사업부와 특수합사업부를 통합하여 함정사업부로 개편하면서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의 회계기능을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며, 국방 문민화 추진을 위해 장군 직위 3개를 고위공무원단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까지 상향하며, 방위사업교육원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인력 14명을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책조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재정계획담당관·재정운영담당관”을 “정책조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계획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6.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8. 예산의 운용 및 통제
9.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분석에 관한 업무
10.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업무

제5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로 한다.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선행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행연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선행연구 조사·분석의 조정·통제 및 관리
3.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및 통보

제10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및”을 “요구서 작성 및”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전투합사업부의 하부조직)”을 “(합정사업부의 하부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투합사업부에 전투함계약팀·호위합사업팀 및 전투체계사업팀을 두되, 전투함계약팀장”을 “합정사업부에 함정계약팀·호위합사업팀·전투체계사업팀·상륙합사업팀·잠수합사업팀 및 지원합사업팀을 두되, 함정계약팀장”으로, “전투체계사업팀장”을 “전투체계사업팀장·상륙합사업팀장·잠수합사업팀장 및 지원합사업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투함계약팀장은 호위함·구축함·고속함·전투체계를” “함정계약팀장은 함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상륙합사업팀장은 상륙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잠수합사업팀장은 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지원합사업팀장은 지원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

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무인계약팀·전략무인기사업팀·전술무인기사업팀”을 “무인계약팀·무인기사업팀”으로, “전략무인기사업팀장”을 “무인기사업팀장”으로, “장교로, 전술무인기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를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략무인기사업팀장은 전략무인항공”을 “무인기사업팀장은 무인항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장의2(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방위사업교육원

제22조의2(방위사업교육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기법의 연구·보급
3. 교육운영위원회 운영
4. 원 내 인사관리
5. 원내 예산편성 및 결산
6. 원 내 보안 및 방호

7. 교육 홈페이지 및 원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교육 홍보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교육과정 운영
2. 교육생 선발·등록 등 학적관리
3. 교육과정 개발 및 표준화
4. 교재개발 및 편찬
5. 사례연구 및 강의
6. 통계 관리
7. 예산 집행
8.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23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5조의3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마목 중 “전략무인기사업팀, 전술무인기사업팀”을 “무인기사업팀”으로 한다.

라. 함정사업부: 호위함사업팀, 전투체계사업팀, 상륙함사업팀, 잠수함사업팀, 지원함사업팀

별표 1 총계 “400”을 “38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공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97”을 “385”로 하며, 일반직 계 “395”를 “383”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6”을 “8”로 하며, 행정사무관 “62”를 “61”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2”를 “60”으로 하며, 행정주사 “65”를 “64”로 하고, 행정주사 · 관세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2”를 “50”으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5”를 “4”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6”을 “4”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1의2 총계 “402”을 “39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공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99”를 “387”로 하며, 일반직 계 “397”을 “385”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6”을 “8”로 하며, 행정사무관 “64”를 “6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2”를 “60”으로 하며, 행정주사 “65”를 “64”로 하고, 행정주사 · 관세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2”를 “50”으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5”를 “4”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6”을 “4”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2 총계 “371”을 “37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공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70”을 “369”로 하며, 일반직 계 “370”을 “369”로 하고,

서기관 “7”을 “6”으로 한다.

별표 3 총계 “353”을 “35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공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52”을 “351”로 하며, 일반직 계 “352”를 “351”로 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9”를 “8”로 한다.

별표 3의2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방위사업교육원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3항 관련)

총계	17
일반직 계	17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향 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 무관	2
행정주사	1
행정주사 · 관세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 통신주사	2
행정주사보	4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재정계획담당관 · 재정운영담당관 및 정보화기획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 정책조정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재정담당관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재정담당관-----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신설>	6.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신설>	7.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신설>	8. 예산의 운용 및 통제
<신설>	9. 세입 · 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 · 분석에 관한 업무
<신설>	10.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

⑥ 재정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3. 예산의 운용 및 통제
4.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분석에 관한 업무
5.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업무
6. 회계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7. 방위력개선사업비 및 전력운영비 일반회계 지출관 업무
8. 청 내 채권 관리 및 보증금 관리 업무
9. 청 내 대금지급 및 세무 관련 업무
10. 국외조달에 관한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 체결
11. 국제계약 업무의 외화 예산 관리

<u>산 운용에 관한 업무</u> <u><삭 제></u>

⑦ (생 략) 제5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국제협력관) ① -----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선행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행연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선행연구 조사·분석의 조정·통제 및 관리 3.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및 통보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차사업팀장은 전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
1. 사업별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1. ----- 요구서 작성 및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전투합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전투합사업부에 전투함계약팀·호위합사업팀 및 전투체계사업팀을 두되, 전투함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호위합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투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13조의3(합정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합정사업부에 합정계약팀·호위합사업팀·전투체계사업팀 및 지원합사업팀을 두되, 합정계약팀장----- ----- ----- 전투체계사업팀장·상륙합사업팀장·잠수합사업팀장 및 지원합사업팀장-----.
② 전투함계약팀장은 호위합·구축함·고속함·전투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	② 합정계약팀장은 합정 ----- ----- -----

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상륙합사업팀장은 상륙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⑥ 잠수합사업팀장은 잠수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⑦ 지원합사업팀장은 지원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4(특수합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특수합사업부에 특수함계약팀·상륙합사업팀·잠수합사업팀 및 지원합사업팀을 두되, 특수함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상륙합사업팀장·잠수합사업팀장 및 지원합사업팀은 서기관·기술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삭 제>
② 특수함계약팀장은 상륙합·	

소해합·잠수합·지원합 분야
(한국형잠수합 개발 관련 분야
는 제외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을 분장한다.

③ 상륙합사업팀장은 상륙합 분
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
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
한다.

④ 잠수합사업팀장은 잠수합 분
야(한국형잠수합 개발 관련 분
야는 제외한다) 방위력개선사업
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지원합사업팀장은 지원합 분
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
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
한다.

제21조(무인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무인사업부에 무인계약팀·
전략무인기사업팀·전술무인기
사업팀 및 과학화체계사업팀을
두되, 무인계약팀장은 부이사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
관급 장교로, 전략무인기사업팀
장 및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부

제21조(무인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 무인계약팀·
무인기사업팀 -----

----- 무인기사업팀장 --

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
로, 전술무인기사업팀장은 서기
관·기술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생략)

③ 전략무인기사업팀장은 전략
무인항공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전술무인기사업팀장은 전술
무인항공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생략)

<신설>

<신설>

----- 장교-

-----.

② (현행과 같음)

③ 무인기사업팀장은 무인항공

-----.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방위사업교육원
제22조의2(방위사업교육원) ① 원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 방위사업교육원에 교육기획
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교육
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서
기관·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기법의 연구·보급
3. 교육운영위원회 운영
4. 원 내 인사관리
5. 원내 예산편성 및 결산
6. 원 내 보안 및 방호
7. 교육 홈페이지 및 원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교육 홍보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교육과정 운영
2. 교육생 선발·등록 등 학적관리
3. 교육과정 개발 및 표준화
4. 교재개발 및 편찬
5. 사례연구 및 강의
6. 통계 관리
7. 예산 집행
8.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사무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신 설>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 7퍼센트-----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공무
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400	388	-1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97	385	-12
·	·	·	
·	·	·	
일반직 계	395	383	-12
고위공무원단	6	8	+2
·	·	·	
·	·	·	
행정사무관	62	61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2	60	-2
행정주사	65	64	-1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가. ~ 다. (생략) 라. 전투합사업부: 호위합사업팀, 전투체계사업팀 마. 특수합사업부: 상륙합사업팀, 잠수합사업팀, 지원합사업팀 바.·사. (생략)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합정사업부: 호위합사업팀, 전투체계사업팀, 상륙합사업팀, 잠수합사업팀, 지원합사업팀 <삭제> 바.·사. (현행과 같음)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가. ~ 라. (생략) 마. 무인사업부: 전략무인기사업팀, 전술무인기사업팀, 과학화체계사업팀 바.·사. (생략)	2.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무인기사업팀 ----- ----- 바.·사. (현행과 같음)

행정주사 · 관세주사 · 사서 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간 호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52</u>	<u>50</u>	-2
행정주사보	<u>45</u>	<u>41</u>	-4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5</u>	<u>4</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u>6</u>	<u>4</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3	<u>2</u>	-1
·	·	·	
·	·	·	

[별표 1의2]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02</u>	<u>390</u>	-12
1	·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399</u>	<u>387</u>	-12
·	·	·	
·	·	·	
일반직 계	<u>397</u>	<u>385</u>	-12
고위공무원단	<u>6</u>	<u>8</u>	+2
·	·	·	
·	·	·	
행정사무관	<u>64</u>	<u>63</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62</u>	<u>60</u>	-2
행정주사	<u>65</u>	<u>64</u>	-1

행정주사·관세주사·사서 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간 호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52</u>	<u>50</u>	-2
행정주사보	<u>45</u>	<u>41</u>	-4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5</u>	<u>4</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u>6</u>	<u>4</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3	<u>2</u>	-1
·	·	·	
·	·	·	

[별표 2]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71</u>	<u>370</u>	-1
1	·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370</u>	<u>369</u>	-1
일반직 계	<u>370</u>	<u>369</u>	-1
·	·	·	
·	·	·	
서기관	<u>7</u>	<u>6</u>	-1
·	·	·	
·	·	·	

[별표 3]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53</u>	<u>352</u>	-1
1	·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352</u>	<u>351</u>	-1
일반직 계	<u>352</u>	<u>351</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9</u>	<u>8</u>	-1
·	·	·	
·	·	·	